## 세무사법



[시행 2022. 11. 24.] [법률 제18521호, 2021. 11. 23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조세법령운용팀) 044-215-4154

제1장 총칙 <개정 2009. 1. 30.>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조의2(세무사의 사명)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**제2조(세무사의 직무)**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(이하 "세무대리"라 한다)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. <개정 2011. 5. 2., 2016. 1. 19., 2017. 12. 19.>
  - 1. 조세에 관한 신고・신청・청구(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) 등의 대리(「개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)
  - 2.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
  - 3.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
  - 4.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  - 5.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
  - 6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·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
  - 7.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. 다만,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.
  - 8.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
  -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2조의2(세무대리의 소개·알선 금지)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,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·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·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23.]

제3조(세무사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- 1.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
- 2. 삭제 < 2012. 1. 26.>
- 3. 삭제 < 2017. 12. 26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3조의2(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)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1.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

- 2.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
- 3.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
- 4.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
-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세무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3.

- 2., 2020. 6. 9.>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- 4.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이 법, 「공인회계사법」또는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(이 법 제 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(停職)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10. 이 법과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2장 시험 <개정 2009. 1. 30.>

제5조(세무사 자격시험)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.

-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<개정 2018, 12, 31.>
-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**제5조의2(시험의 일부 면제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 <개정 2020. 6. 9.,

- 1. 국세(관세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- 2.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.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
- 4.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(財政兵科)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.<개정 2020. 6. 9.>
- 1.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7. 12. 26., 2020. 6. 9.>
- 1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
- 2.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<개정 2020. 6. 9.> [전문개정 2009. 1. 30.]

**제5조의3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**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1.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
- 2.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

[본조신설 2011. 7. 25.]

제3장 등록 <개정 2009. 1. 30.>

- 제6조(등록)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,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, 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(이하 "공직퇴임세무사"라 한다)인지 여부,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.
 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3. 2.>
  - 1.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.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  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.
  -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・휴업・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・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1. 1., 2021. 11. 23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[2021. 11. 23.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. 4. 26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

제7조(등록의 취소)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

- 1.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- 2.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
- 4.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
- 5. 「공인회계사법」이나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
- 6. 사망한 경우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8조(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)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·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(이하 "소속협회"라한다)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 1. 1.,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4장 세무사의 권리 • 의무 <개정 2009. 1. 30.>

제9조(기명날인)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· 신청서 · 청구서,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 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0조(조사 통지)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· 신청서 ·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1조(비밀 엄수)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2조(성실의무)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2조의2(탈세 상담 등의 금지)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(逋脫)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2조의3(명의 대여 등의 금지)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, 11, 23.>
  -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11. 23.>
  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21. 11. 23.> [전문개정 2009. 1. 30.]
- 제12조의4(금품 제공 등의 금지)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  - 2.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

[본조신설 2016. 3. 2.]

[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<2016. 3. 2.>]

- 제12조의5(사무직원)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.
  - ③ 사무직원의 자격・인원・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[제12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<2016. 3. 2.>]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2조의6(세무사의 교육)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<개정 2013. 1. 1., 2020. 6. 9.>
  -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. 다만, 질병·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13. 1. 1.>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·장소·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. 1.>

[제12조의5에서 이동 <2016. 3. 2.>]

- 제13조(사무소의 설치)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·변호사·법무사·변리사·관세사·감정평가사·공인노무사·공인중개사·경영지도사·기술지도사·행정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.
  - ③ 삭제<2015. 12. 29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3조의2 삭제 <2002. 12. 30.>

- 제14조(업무실적 보고) ① 세무사(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)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)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 · 신청대리, 청구대리, 세무조사대리, 자문·고문,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, 수임건수,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, 2021. 11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, 보관방법, 보존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**제14조의2(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)**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(緣故)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- 제14조의3(수임제한 등) ① 5급 이상(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,「국가공무원법」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(이하 "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"라 한다)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, 국세청,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 다만,「국세기본법」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.
  - 1.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
  - 2.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
-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,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,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23.]

제15조(계쟁권리의 양수 금지) 세무사는 계쟁권리(係爭權利)를 양수(讓受)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(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)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
  - 2.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
  - 3. 국가・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  -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·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.
  - 1. 학교・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(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)
  - 2.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
  -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6조의2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세무사(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)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4장의2 세무법인 <신설 2002. 12. 30.>

- 제16조의3(설립)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<개정 2016. 3. 2., 2020. 6. 9.>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사무소와 분사무소(分事務所)의 소재지
  - 4. 사원 및 이사의 성명・주민등록번호(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) 및 주소
  - 5. 출자 1계좌의 금액
  - 6.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
  - 7. 자본금 총액
  - 8. 결손금 보전(補塡)에 관한 사항
  - 9.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
  - 10.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
  - 11. 업무에 관한 사항
  - 12.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**제16조의4(세무법인의 등록)**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
- 2.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
- 3.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
- 4.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,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의5(사원 및 이사 등)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(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)이어야하며,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한다. <개정 2016. 3. 2.>
  -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.<개정 2016. 3. 2., 2020. 6. 9.>
  - 1. 사원이 아닌 사람
  - 2.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3.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(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4.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
  -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(이하 "소속세무사"라 한다)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20. 6. 9.>
  -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.
  -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.
  - 1.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
  - 2.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3.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6(자본금 등)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(增資)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

11. 23.>

-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(計上)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7(손해배상준비금 등)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16조의8(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)**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)을 뺀금액을 말한다.<개정 2021. 11. 23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9(명칭)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[전문개정 2009. 1. 30.]
- 제16조의10(사무소)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**제16조의11(업무 수행의 방법)**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,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.
  -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,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12(경업의 금지)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13(해산)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.
  - 1.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
  - 2. 사원총회의 결의
  - 3. 합병
  - 4. 등록취소
  - 5. 파산
  - 6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  -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(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)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(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)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(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. 1,, 2021. 11. 23.>
  -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16조의14(정관 변경의 신고)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.>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(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)
- 5. 자본금 총액(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)
- 6.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
- 7. 업무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6조의15(등록취소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, 12, 29, 2016, 3, 2,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  - 2.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 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  - 4.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5. 제16조의5제4항 제5항, 제16조의7, 제16조의8, 제16조의9제1항,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 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 한 경우
 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,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11. 23.>
  -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11. 23.>
  - ⑤ 제3항에 따른 통보·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1. 11. 23.> [전문개정 2009. 1. 30.]
- **제16조의16(세무법인에 관한 준용)**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4조의2, 제15조 및 제17조제4항(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세무사"는 "세무법인"으로 보고, 제17조제4항 중 "징계"는 "등록취소 및 업무정지"로 본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6. 3. 2., 2018. 12. 31.>
  -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상법」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5장 징계 <개정 2009. 1. 30.>

- 제17조(징계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 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. 1.>
  - 1. 이 법을 위반한 경우
  - 2.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

-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등록취소
- 2. 2년 이내의 직무정지
- 3.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4. 견책(譴責)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.
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, 징계내용,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 < 신설 2018. 12. 31. >
-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,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21, 11, 23,>
-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 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11. 23.>
-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제7항에 따른 통보·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8. 12. 31., 2021. 11. 23.>

## 제6장 한국세무사회 <개정 2013. 1. 1.>

- **제18조(설립과 감독)**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・발전을 도모하고,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.
  -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,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.
  -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.
  -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 -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3. 1. 1.]
- 제18조의2(회원에 대한 연수 등)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・감독한다. <개정 2013. 1. 1, 2016. 3. 2, 2020. 6. 9.>
  - 1. 회원
  - 2.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
  -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.<개정 2013. 1. 1.>
  -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<개정 2013. 1. 1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제18조의3(업무의 위촉 등)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. 1.>
  -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3. 1. 1.>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09. 1. 30.]

**제18조의4(국선대리 협력의무 등)** 한국세무사회는 「국세기본법」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제19조(회원의 제명)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1. 1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<신설 2011. 6. 30.>

제19조의2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외국세무자문사"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2. "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"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.
- 3. "외국세무법인"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4. "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"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.
- 5. "조약등"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(국가연합,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)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.
- 6. "원자격국"(原資格國)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. 다만,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・성(省)・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・성・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11. 6. 30.]
- **제19조의3(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)**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"자격승인 신청인"이라 한다)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6. 9.>
  - 1.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2.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3.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,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 류
  - 4.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,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-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**제19조의4(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**제19조의5(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)**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1. 1.>
  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,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1. 1.> [본조신설 2011. 6. 30.]
- **제19조의6(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)**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
  - 2.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(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 - 3.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
  - 4. 폐업신고를 한 경우
  - 5. 사망한 경우
 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 6. 30.]
- 제19조의7(업무범위)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9조의8(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)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
  - 2.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
  - 3.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
  - 4.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**제19조의9(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)**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1. 1.>
  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,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 1. 1.> [본조신설 2011. 6. 30.]
- 제19조의10(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)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6. 3. 2.>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2.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
- 3. 제19조의7, 제19조의11제3항, 제19조의12, 제19조의13,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 12조의5까지, 제15조,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9조의11(자격의 표시) ① 외국세무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원자격국 표시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이 주, 성,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에 한정된 지역인 경우 그지역이 소속된 국가의 명칭 다음에 세무자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.
  - ②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,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하여야 하고,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, 본점 사무소의 명칭 순으로 표시한 다음에 세무자문사무소라고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세무자문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개인 또는 법인소속 외국세무자문사의 원자격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9조의12(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)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6. 9.>
  -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 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·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.<개정 2020. 6. 9.>
  - 1.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
  - 2.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
  - 3.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
  -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·휴업·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·이전·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9조의13(고용·동업 등의 금지)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.
  -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,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제19조의14(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)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3. 2.]

[종전 제19조의14는 제19조의15로 이동 <2016. 3. 2.>]

제19조의15(준용규정)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, 같은 조 제4항, 제12조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3조제1항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5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4제3항, 제16조의7, 제16조의10, 제16조의11, 제16조의13,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5항까지, 제17조, 제18조제2항, 제19조,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6. 3. 2., 2018. 12.

31., 2021. 11. 23.>

[전문개정 2013. 1. 1.]

[제19조의14에서 이동 <2016. 3. 2.>]

제7장 보칙 <개정 2009. 1. 30.>

**제20조(업무의 제한 등)**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. 다만, 「변호사법」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

11. 23.>

-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[2021. 11. 23.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. 4. 26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

**제20조의2(세무대리업무 등록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):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
- 2.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):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
-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·제2호,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, 장소, 시기,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, 제2조의2, 제4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3조, 제14조(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),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(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 및 제8장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세무사"는 "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"로, "한국세무사회"는 "한국공인회계사회"로, "제6조"는 "제20조의2제1항"으로 각각 본다.
-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"제12조의6제 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"는 "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"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1, 11, 23.]

[시행일: 2022. 11. 24.] 제20조의2제5항(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

- **제20조의3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**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11. 5. 2., 2013. 1. 1., 2020. 6. 9.>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.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3.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(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)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[제목개정 2011. 5. 2.]

- 제21조(규제의 재검토)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: 2016년 1월 1일
  - 2.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,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: 2016년 1월 1일
  - 3.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,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: 2016년 1월 1일
  - 4.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: 2016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5. 12. 29.]

**제21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**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6. 3. 2.]

제8장 벌칙 <개정 2009. 1. 30.>

- **제22조(벌칙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 6. 30.>
  - 1.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
  - 2. 제11조(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  - ② 세무사로서「조세범처벌법」에 규정된 범죄와「형법」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(敎唆)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(刑期)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- **제22조의2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 6. 30., 2016. 3. 2., 2021. 11. 23.>
  - 1. 제2조의2(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·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 거나 요구한 자
  - 2.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 대리를 수행한 자
  - 3. 제12조의3제1항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
  - 4. 제12조의3제2항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
  - 5. 제12조의3제3항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
  - 6. 제14조의3(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
  - 7.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(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제17조(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 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
- 9.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
- 10. 제20조제3항(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
- 11.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

- 제2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 6. 30., 2016. 3. 2.>
  - 1.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(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자
  - 2. 제15조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
  - 3.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
  - 4.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(競業)을 한 자
  - 5. 삭제 < 2021. 11. 23.>

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24조(양벌규정)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, 제22조의2제3호·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 11. 23.> [전문개정 2009. 1. 30.]

제25조(몰수·추징) 제12조의3(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1. 23.]

부칙 <제18521호,2021. 11. 23.>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3, 제20조의2제5항(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**제2조**(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(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(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,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(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)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
- 3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
-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
- 3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
-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8제3항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"를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 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"로 한다.

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세무사법」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